

보건복지부공고 제2021-739호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1-895호

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인증운영기관 설치·운영의 위탁 등) ① 주무부장관은 장애인
등편의법 제10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운영기관의 업무 수
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
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운영기관(이하 “인증운영기
관”이라 한다)으로 정해 인증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을 위탁할 수 있
다.

1. 도시·군계획, 건축, 토목, 조경, 교통, 장애인복지(편의시설 분야를
포함한다) 분야(이하 “전문분야”라 한다. 이 호에서 같다) 중 4개 이
상의 전문분야에 상근하는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전
문인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

가. 해당 전문분야에서 기술사 또는 건축사

나.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인증업무를 수
행한 사람

다.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인증업무를 수
행한 사람

라.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인증업무를 수

행한 사람

마.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인증업무를 수행한 사람

바. 장애인복지(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)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3년 이상 인증업무를 수행한 사람

2. 인증운영기관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출 것

3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운영기관 업무처리규정을 갖출 것

가. 인증기관 운영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

나. 인증기관 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
다. 인증기관 사후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

라. 인증운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

마. 그 밖에 인증운영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

4. 인증운영과 관련한 연구 또는 사업추진 실적이 있을 것

②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10제1항제5호에 따라 인증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교육에 관한 업무

2.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

3. 인증기관 사후관리의 지원에 관한 업무

4. 인증제도의 홍보·교육·컨설팅, 조사·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

5. 인증제도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

6. 인증 관련 통계의 작성·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

7. 그 밖에 인증 활성화를 위해 주무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

③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인증운영

기관의 사업내용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: 매년 1월 31일까지
2. 대상시설별 인증 현황 등 인증에 관한 통계: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

④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⑤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에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6 각 호의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주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.

⑥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인증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
2. 제1항에 따른 위탁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3.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

제12조의2 제1항 중 “수립하여야”를 “수립하고 인증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”로 하고, 제2항 중 “소유자등에게”를 “소유자등 및 인증운영기관에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인증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한 계획 및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인증운영기관은 사후관리 매뉴얼 작성·배포, 사후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, 사후관리단 운영 등 인증기관의 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2조의3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11제1항 후단에 따라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등을 하는 경우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조의2(인증운영기관 설치·운영의 위탁 등) ① 주무부장관은 장애인 등편의법 제10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운영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운영기관(이하 “인증운영기관”이라 한다.)으로 정해 인증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</u> <u>1. 도시·군계획, 건축, 토목, 조경, 교통, 장애인복지(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) 분야(이하 “전문분야”라 한다. 이 호에서 같다.) 중 4개 이상의 전문분야에 상근하는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전문인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</u> <u>가. 해당 전문분야에서 기술사 또는 건축사</u> <u>나.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인증업무를 수행한 사람</u>

다.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
취득한 후 4년 이상 인증업무
를 수행한 사람

라.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
취득한 후 6년 이상 인증업무
를 수행한 사람

마.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자격을
취득한 후 5년 이상 인증업무
를 수행한 사람

바. 장애인복지(편의시설 분야를
포함한다) 업무를 6년 이상 수
행한 사람으로 3년 이상 인증
업무를 수행한 사람

2. 인증운영기관 업무를 수행할
전담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
갖출 것

3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인
증운영기관 업무처리규정을 갖
출 것

가. 인증기관 운영의 절차 및 방
법에 관한 사항

나. 인증기관 운영위원회 구성·
운영에 관한 사항

다. 인증기관 사후관리의 지원에
관한 사항

라. 인증운영 등의 보고에 관한
사항

마. 그 밖에 인증운영기관 업무

수행에 필요한 사항

4. 인증운영과 관련한 연구 또는
사업추진 실적이 있을 것

②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10제
1항제5호에 따라 인증운영기관은
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
교육에 관한 업무

2.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
업무

3. 인증기관 사후관리의 지원에
관한 업무

4. 인증제도의 홍보·교육·컨설팅,
조사·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
무

5. 인증제도 개선 및 활성화를 위
한 업무

6. 인증 관련 통계의 작성·분석
및 활용에 관한 업무

7. 그 밖에 인증 활성화를 위해 주
무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

③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
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인증
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주무부장
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그 해
의 사업계획: 매년 1월 31일까지

2. 대상시설별 인증 현황 등 인증

제12조의2(사후관리) 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대상물의 유지·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계획을 매	에 관한 통계: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④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 ⑤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에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6 각 호의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주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. ⑥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인증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 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. 제1항에 따른 위탁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.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의2(사후관리) ① ----- ----- -----
--	--

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, 인증내용과 다르게 유지·관리되고 있는 인증시설 및 인증지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12조의3(인증수수료) ① 소유자등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, 제9조제7항에 따른 인증연장 신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예비인증 신청을 하려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에게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. <후 단 신설>

----- 수립하고 인증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---

② -----

----- 소유자등 및 인증운영기관에 -----

③ 인증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한 계획 및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인증운영기관은 사후관리 매뉴얼 작성·배포, 사후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, 사후관리단 운영 등 인증기관의 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2조의3(인증수수료) ① -----

----- 다만,
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11제1항 후단에 따라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등을

② ~ ③ (생략)	<u>하는 경우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.</u>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	---